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48호

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의3(과태료의 징수유예 등)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7월 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1. 공고사유 :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 : 2022. 7. 1. ~ 2022. 7. 15.(15일)
- 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(원)	체납자 주소
1	나오양	1977.01.30.	0178220274100001582	31,860,000	서울 용산구 후암로 28 다길
2	김진구	1975.06.04.	0178220274100001583	457,740	대구 달서구 용산로
3	김혜경	1969.02.18.	0178220274100001584	21,157,200	경북 경산시 성암로 3 길
4	지연희	1980.10.08.	0178220274100001585	1,780,480	대구 북구 대현남로 6 길
5	(주)엠제이피	170111-0711***	0178220274100001586	3,805,600	경북 구미시 송동로
6	권재인	1992.08.26.	0178220274100001588	2,024,730	경북 안동시 송천 2 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(원)	체납자 주소
7	이동숙	1967.06.05.	0178220274100001729	4,700,480	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
8	박재봉	1966.09.06.	0178220274100001730	6,140,000	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
9	손정현	1980.04.09.	0178220274100001731	26,300,000	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
10	이한영	1961.11.20.	0178220274100001732	856,960	부산 기장군 기장을 차성동로67번길
11	이흥숙	1966.01.11.	0178220274100001733	4,545,500	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

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, 1207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